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
2023. 11. 29(수) 10:00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약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
조례안
(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56호
- 나. 제 출 자 : 정순기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,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악취실태조사(안 제3조 및 제5조)
- 다.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- 라. 지원사업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관리·감독 사항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,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: 2023. 11. 16. ~ 2023. 11. 22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금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 - 정의(안 제2조) :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를 인용하여 규정함
- 2) 구청장의 책무 및 악취실태조사(안 제3조 및 제5조)
 - 구청장 책무(안 제3조) :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함.
 - 실태조사(안 제5조) :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·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
- 3)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 -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
- 4) 지원사업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관리·감독 사항(안 제7조)

다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쾌적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.

따라서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문제에 대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「악취방지법」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악취방지법

[시행 2023. 9. 29.] [법률 제19310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7. 16.>

1. “악취”란 황화수소, 메르캅탄류, 아민류,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.
2. “지정악취물질”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악취배출시설”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, 기계, 기구,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복합악취”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.
5. “신고대상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
 - 나.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

[전문개정 2010. 2. 4.]
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며,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·연구,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·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, 동물의 사육,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2. 4.]